

파주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2000. 8. 21

제 출 자 파주시장

□ 개정이유

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(2000. 1. 28, 법률제6,236호)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등 민원 신청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있어 관련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가.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정함 (안별표1)

-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시 : 중개업자 9,000원, 법인 20,000원
-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시 : 9,000원
- 분사무소의 설치신고시 : 9,000원

나. 파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함
(안부칙제2항)

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1]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제2호에 자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 분	기준	요 액		비 고
		동	읍·면	
자. 부동산중개업관계				
(1)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				
- 공인중개사	1건	9,000	9,000	
- 법 인	1건	20,000	20,000	
(2) 중개사무소등록증제교부	1건	9,000	9,000	
(3) 분사무소의 설치신고	1건	9,000	9,000	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폐지) 파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지적과 ☎ 031-940-4873
입 안 자	지 적 과 장	남 상 균
	부동산관리담당	서 범 석
	담 당 자	이 세 근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

개정안

[별표1]

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

2. 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, 지정, 확인등 (단위: 원)

구분	기준	요액		비고
		동	읍·면	
아. 공중위생업관계 (1)~(7) 생략				
<신 설>				

구분	기준	요액		비고
		동	읍·면	
아. 공중위생업관계 (1)~(7) 현행과 같음				
자. 부동산중개업관계 (1)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- 공인중개사 - 법 인	1건 1건 1건 1건	9,000 20,000 9,000 9,000	9,000 20,000 9,000 9,000	
(2)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				
(3) 분사무소의 설치신고				